인천 청라지구 13블록 / 16블록 중흥 S-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정책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안내(건설교통부[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청약 등의 시행지시] 2006. 11. 27.)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 관람(건설교통부[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인터넷청약 등의 시행지시] 2006. 11. 27.)에 의거 당사 견본주택 공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2007. 12. 21)부터 당첨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이버모델하우스(www.ics-class.co.kr)를 통해 사전관람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공 통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병역기제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1본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KB모바일청약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크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1373호(2007. 12. 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개발지구 1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6개동, 지하 1층 ~ 지상 25층 총 476세대 (3자녀 이상 특별공급 14세대, 경제자유 특별공급 24세대 총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천원)

구분	지역코드 인천시	지역코드 수도권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계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10%) '08.05.20	2차(10%) '08.10.10	3차(10%) '09.02.27	4차(10%) '09.07.10	5차(10%) '09.12.29	6차(10%) 10.05.20	잔금 30% 입주시
민영주택	21648–01	21649–01	2007001 215(01)	143.1193	118.3442	24.7751	143.1193	75.8261	218.9454	83.55	180	14	1	8	203,438	328,362	531,80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159,540
													2	8	203,438	338,362	541,80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162,540
													3~5	24	203,438	348,362	551,80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165,540
													6~11	48	203,438	358,362	561,80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168,540
													12~옥상층	92	203,438	368,362	571,80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171,540
	21648–02	21649–02	2007001 215(02)	144.5300	119.2079	25.3221	144.5300	76.3795	220.9095	84.16	58	5	1	3	204,923	326,877	531,80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53,180	159,540
													2	3	204,923	336,877	541,80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54,180	162,540
													3~5	12	204,923	346,877	551,80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165,540
													6~11	24	204,923	356,877	561,80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56,180	168,540
													12~옥상층	16	204,923	366,877	571,80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57,180	171,540
	21650–01	21651–01	2007001 216(01)	165.5021	136.0857	29.4164	165.5021	87.1937	252.6958	96.08	60	5	1	4	233,938	390,622	624,560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187,368
													2	4	233,938	400,622	634,560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190,368
													3~5	12	233,938	410,622	644,560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193,368
													6~11	24	233,938	420,622	654,560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196,368
													12~옥상층	16	233,938	430,622	664,560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199,368
	21650–02	21651–02	2007001 216(02)	166.7794	139.3011	27.4783	166.7794	89.2537	256.0331	98.35	178	14	1	6	239,465	385,095	624,560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62,456	187,368
													2	8	239,465	395,095	634,560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63,456	190,368
													3~5	24	239,465	405,095	644,560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64,456	193,368
													6~11	48	239,465	415,095	654,560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65,456	196,368
													12~옥상층	92	239,465	425,095	664,560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66,456	199,36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1371호(2007. 12. 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개발지구 1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4개동, 지하 1층 ~ 지상 15층 총 174세대 (3자녀 이상 특별공급 5세대, 경제자유 특별공급 9세대 총 1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천원)

구분	지역코드 인천시	지역코드 수도권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계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	층수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10%) '08.05.20	2차(10%) '08.10.10	3차(10%) '09.02.27	4차(10%) '09.07.10	5차(10%) '09.12.29	6차(10%) 10.05.20	잔금 30% 입주시
민영주택	21619–01	21620–01	2007001194 (01)	166.0438	139.3011	26.7427	166.0438	91.0168	257.0606	110.76	56	4	1	2	190,748	432,162	622,910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186,873
													2	7	190,748	442,162	632,910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189,873
													3~5	12	190,748	452,162	642,910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192,873
													6~11	24	190,748	462,162	652,910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195,873
													12~옥상층	16	190,748	472,162	662,910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198,873
	21619–02	21620–02	2007001194 (02)	166.3337	140.9955	25.3382	166.3337	92.1238	258.4575	112.11	60	4	1	4	193,069	429,841	622,910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186,873
													2	4	193,069	439,841	632,910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189,873
													3~5	12	193,069	449,841	642,910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192,873
													6~11	24	193,069	459,841	652,910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195,873
													12~옥상층	16	193,069	469,841	662,910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198,873
	21619–03	21620–03	2007001194 (03)	168.5289	140.4684	28.0605	168.5289	91.7794	260.3083	111.69	58	6	1	2	192,346	430,564	622,910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62,291	186,873
													2	4	192,346	440,564	632,910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63,291	189,873
													3~5	12	192,346	450,564	642,910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64,291	192,873
													6~11	24	192,346	460,564	652,910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65,291	195,873
													12~옥상층	16	192,346	470,564	662,910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66,291	198,873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시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미포함 되었으며, 본 주택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 계약금(와닥서)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금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을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공유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을(로)가 있는 등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만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기준: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사정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부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납부일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입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주택공급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2003. 6. 7부터 시행)로 지정되어 분양계약 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세대 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관련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일을 기준으로 함
※ 인천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통장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 속한 분과 2002. 9. 50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되어 있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13B/L : 24세대, 16B/L : 9세대)
–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3조 입주자격심사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지의 지역을 유지하고 입주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전출, 퇴직 등한 자는 본양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당시 견본주택에 접수하고, 동 · 호수 추첨일 이후 당시에서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청약접수 시 제출하신 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추천서를 요청함
– 인천경제자유구청에서 천거서로 인정되어 추천받아 주택을 배정받아(계약 세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동 · 호수 계약 이후 미계약 동 · 호수에 관련에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동 · 호수 추첨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당첨자로 간주되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다르서 무주택 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 및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해 해당하는 자로서 입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교육학교의 운영 및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해에 개설된 외국인학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4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당해 지구 소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또는 당해 지역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무주택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3. "학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학교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설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6.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무주택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기간 산정은 연속, 세대주 기간 산정은 휴산 외국인은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11일(화) 10:00~16:30까지 당사 인천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16:00 이전 당사 견본주택 입장객에 한함)
• 동 · 호수 추첨 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11일(화) 18:00 당사 인천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구비서류

외 국 인	내 국 인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인천광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여권 및 비자(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지에 한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동 포함) • 호적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증서류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1년 이상) • 재직증명서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 란은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해당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을 경우, 외국인에게 우선 공급함(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이월 시 본인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이 초과될 경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부적격자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당첨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구 분(㎡)	13B/L 143.1193	144.5300	165.5021	166.7794	계	16B/L 166.0438	166.3337	168.5289	계
세대수	9	3	3	9	24	3	3	3	9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세대 우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2조 입주 자격심사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계약자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 특별공급 대상지의 지역을 유지하고 입주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전출, 퇴직 등한 자는 본양받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반납하고 사업주체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함
2.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 청약접수자는 청약접수 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이 "주택특별공급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부적격으로 판명 시 계약이 해지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므로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람.
3. 특별공급 추첨당첨자는 본 입주자 모집 계약이후의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간주되며, 특별분양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만2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 가입자로 청약저축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 가입자로 청약부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세대주로 간주함
–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은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에다 5점씩 감점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따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에다 5점씩 감점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07년 12월 21일까지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정당 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세대 및 계약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2007년 12월 21일 당사 견본주택 내에 공급방법을 재시할 예정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시(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 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이미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없는 경우 •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과기간 및 요건
• 면적변경한 자 신청 요건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하는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격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일반공급 신청방법
• 충별 · 동별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인천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은 인천시에 거주자가 30%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70%의 비율로 공급함
•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물량에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다시 추첨함
• 1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세부 불가하여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로 하여, 가점제 입주자 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1순위 추첨제로 청약접수되며,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금융)없이 주택금융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 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약예금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청구청약 기능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만 가능]

■ 청약가점제 우선공급
• 가점제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1순위 공동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자격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주(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여,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 질환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1순위 전주택형	1. 제3조 제2항 제3호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인 사업주체가 고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2호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 근로단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 제6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에 대하여 해당 리라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1. 제3조 제2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일 기준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1. 제3조 제2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및 제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을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이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제10호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수도권을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이전하여 따라 그 중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대주는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해금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1. 제3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제11조의 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1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내지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제15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이외의 지역에서 민영주택 등의 공급",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제19조의 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및 제19조의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 제6항 "사업주체는 제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제6조 "예비입주자의 선정" 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또는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당첨자로 본다. 바. 법 제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 2 제2항 단서"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가 당